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643 감봉2월처분취소청구

원 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민정, 오범석

피 고 전라북도교육감

[Redacted]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부터 2014. 2. 28.까지 전주선화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고, 2014. 3. 1.부터 현재까지 [REDACTED]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2013. 7. 11. 14:45경 전주선화학교 고2 교실 내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중 발생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REDACTED]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REDACTED] 을 1회 간음하는 사건 (이하 '쟁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REDACTED] 의 모 권선희가 2013. 7. 24. 민원을 제기하는 등 4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권선희는 2014. 6. 12. 전주선화학교 성폭력 사건 은폐 등과 관련한 5차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부터 2015. 3. 6.까지 기간 중 39일간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다음, 그 감사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15. 7. 16.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 |
|--|
| <p>① 원고는 2013. 7. 11. 성폭력 의심 정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② 미르피아 여성병원 공지원 담당의가 '(미르피아 여성병원은) 성폭력 검사가 안 된다.',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라'고 안내한 부분에 대해 보고받았음에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검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p> <p>③ 같은 달 16. 전라북도교육청에 위와 같은 이셋별 학생 성폭력 의심 정황을 누락하여 보고한 부분에 대해 방조(묵인)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을 통한 조사를</p> |
|--|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묵인)하였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하지 않았음.

④ 또 원고는 같은 달 11. 학생 면담(조사) 등을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준형 학생을 가해자로 의심하고,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또 자율학습 감독을 소홀히 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채윤미 교사에 대해 걱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준형 학생의 장기 결석에 영향을 미치고, 민원이 장기화된 부분에 책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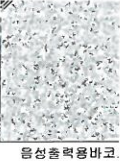
⑤ 또한 같은 해 9.경 감사 전에 문중섭 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누락) 내용이 반영된 감사 대비 자료를 나누어 주고, 말을 맞추도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

⑥ 또 같은 해 11. 6. 문희식 행정실장과 함께 다솜학교를 방문한다고 허위 출장 처리 후 고창에 가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2013. 10. 15. 기 감사(1차 민원) 결과 출장 관리 소홀 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요구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같은 비위를 일으킴.

라.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다.항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학교폭력(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의 제2항¹⁾ 등에서 규정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등에 의거 감봉 3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②, ③, ④ 징계사유

1) 제34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음성출력용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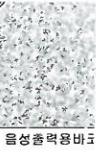
는 인정할 수 없고, 위 ①, ⑤, ⑥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감봉 3월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봉 2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1584 사건의 불기소결정문)를 보면, 검찰은 원고가 이셋별 학생과 유준형 학생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성범죄 사실 미신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피고에게 위 두 학생 사이의 성접촉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보고됨)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고려하면, “② 원고는 미르피아여성병원 담당의사가 ‘(미르피아 여성병원은) 성폭력 검사가 안 된다.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라’고 안내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검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③ 2013. 7. 16. 피고에게 이셋별 학생 성폭력 의심 정황을 누락하여 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방조(묵인)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묵인)하였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당시에 이셋별 학생에 대해 성폭력 검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혹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원고가 피고에게 고의로 학생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 나아가 “④ 원고는 사건 발생 당시 학생면담(조사) 등을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준형 학생을 가해자로 생각하고,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유준형 학생의 장기 결석에 영향을 미쳤고, 민원이 장기화된 사실에 책임이 있다.”는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김영기 교사에게 유준형 학생의 속옷 검사를 하도록 하여 학생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2013. 12. 10. 받은 불문경고 처분의 처분사유와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 다만, “① 원고가 2013. 7. 11.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관





음성출력용바코드

련 교사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원고는 두 학생 사이의 성접촉 내지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한편 검찰이 청구인의 직무유기죄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위 징계사유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 “⑤ 원고가 2013. 9.경 감사 전에 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내용이 반영된 감사 대비 자료를 나누어주고 (교사들로 하여금) 말을 맞추도록 하여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의 경우,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원고가 감사 대비 자료를 보면서 교사들로 하여금 말을 맞추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마지막으로, “⑥ 원고가 2013. 11. 6. 행정실장과 함께 다송학교에 방문한다고 출장 처리한 후 교장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6, 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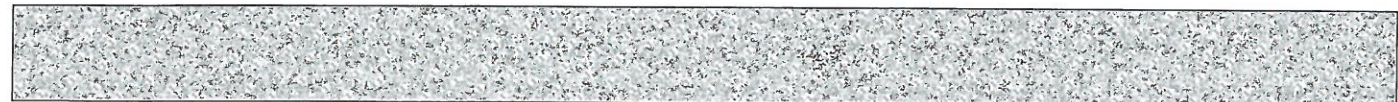
가. 원고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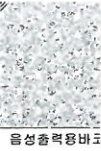
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피고는 이미 쟁점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10. 원고에게 '불문(경고)' 징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는 2013. 12. 10.자 징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쟁점 사건 발생 당시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의 지시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부모님과의 면담 등을 통한 조사 결과





성폭력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제 2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확한 사실의 진술을 위하여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대비한 것이지 허위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다솜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행선지가 바뀐 경우 바로 복귀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없거나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경미하고, 원고의 교육자로서의 업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중하다.

나. 관계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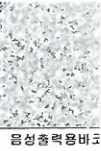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거듭 징계를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쟁점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장애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또는 병원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교사 김영기에게 유준형의 속옷 검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후 학부모가 자율학습 담당교사 채윤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학교 구성원 간 불협화음을 제대로 조율·관리하지 못하여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인정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와는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2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중징계로, 감봉 또는 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경고처분을 징벌적 제재인 징계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5, 12 내지 15, 17,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윤미가 목격한 장면 관하여



쟁점 사건 발생 당일 전주선화학교 고2 교실에서는 [REDACTED], [REDACTED] 등 고등학생 5명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교사 채윤미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교감인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그 날 교장실에서 교사 회의가 열렸다. 채윤미가 목격한 장면이 '유준형이 바지를 내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REDACTED] 이 바지를 내린 채로 [REDACTED] 의 무릎 위에 앉아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REDACTED] 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REDACTED] 은 그 옆에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서 있었다'는 것이냐가 문제되었는데, 채윤미는 교육청 감사 및 쟁점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REDACTED] 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REDACTED] 이 그 옆에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채윤미 주장에 반하는 권선희, 이효영 등의 일부 진술만으로 채윤미 주장을 뒤집고 채윤미가 학생간의 직접적인 성 접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REDACTED] 의 모 권선희는 사건 발생 당일 학교에 방문하자 교장실에서 회의중이었고, 이효영 교사가 회의 결과에 대해 '[REDACTED] 이가 바지를 벗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REDACTED] 이 바지를 벗은 채 [REDACTED] 이 무릎 위에 앉아 있었으며, [REDACTED] 의 팬티에 분비액이 많았고, 정액, 삽입, 사정 등의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효영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효영은 교장실 회의 당시 누군가 '여학생이 남학생 무릎에 앉아 있었다'는 말을 하였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고, 회의에 채윤미가 참석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회의 도중 반대편에 앉아 있는 청각장애를 가진 민병화 교사에게 수화로 회의내용을 통역해 주느라 회의에 온전히 집중하기에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회의에서 누구도 학생들 간 성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하거나 수사기관 신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효영 역시 당시 성폭력이나 성범죄라는 인식을 하지는 못해서 수사기관 신고나 교육청 보고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채윤미가 위와 같은 자세에 대한 언급이 추측성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효영이 회의에서 잘못 듣거나 취지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교장 문종섭도 "채윤미 교사는 '남학생 무릎에 여학생이 앉아 있기에 남학생의 등짝을 때리고 혼냈더니 울어서 세수를 시켰다. 남학생은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있었고, 여학생은 고무줄 바지만 내려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문종섭은 아래 ③, ④항 기재 사안보고의 결재자인 점,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의 진술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는 점, 문종섭은 당시 교장으로서 사건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자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② 위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셋별, 유준형과 당시 교실에 함께 있었던 박지성의 진술은 위 이셋별은 언어장애 2급으로 면담은 가능하나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고, 유준형은 청각·언어장애 2급, 박지성은 청각장애 1급으로 의사소통(수화)에 어려움이 있고,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인 점, 그 진술에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시간적 선후관계도 불분명하며, 조사자와 통역자의 반복 또는 유도신문 등에 의하여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쟁점 사건과 관련하여, 2013. 7. 16. 교사 김영기에 의해 작성된 1차 (성추행) 사안보고에는 '이셋별 학생. 보호자와 교체중인 아저씨에게 성추행 의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0. 10. 김영기에 의해 작성된 2차 (성관련) 사안보고에는 '7월 11일 오후 3시경 시험 끝나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셋별 학생이 교실에서 속옷을 입고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로 서 있고, 유준형 학생이 근처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감독교사가 발견함. 9월 25일, 30일 유준형 학생 어머니께서 내교하여 피해자 신고 및 심리치료를 위하여 10월 2일 원스톱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10월 11일 10시에 유준형 학생과 보호자께서 원스톱센터에 방문하기로 시간 약속을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한편, 2013. 10. 16. 유준형 담임교사인 민병화에 의해 작성된 3차 (성폭력) 사안 보고에는 '◇2013. 7. 11. 목요일 오후 15:00경 고2 교실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책임교사(채윤미)가 없는 사이에 고2 이셋별 학생이 팬티를 입은 상태로 고3 유준형 학생 무릎 위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며, 교실 밖에서 이 모습을 본 채윤미 교사가 유준형과 눈이 마주쳐 교실로 들어와서 등을 때림. 7. 11. 목요일 오후 5시 이후 학교장의 명을 받아 고3 부담임 교사(이효영)와 어머니가 면담한 내용, 유준형 학생이 7. 11.날 있었던 사실을 엄마에게 표현한 내용이 일치함. ◇9. 25.(수), 9. 30(월), 10. 16.(수) 어머니 내교하여 사안보고를 다시 해줄 것을 고3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학교장에게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윤미는 2013. 11. 29. 3차 사안보고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문종섭, 민병화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민원에 대한 감사 내지 위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문종섭은 '여학생이 남학생 무릎 위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교실 밖에서 이 모습을 채윤미 교사가 봤고 준형이의 등을 때렸다'는 내용은 확인한 것이 아니라 권선희가 말한 대로 작성한 것이고, 권선희가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효영이 동조하였으며 위 두사람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민병화 역시 권선희가 2차 사안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문종섭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김영기 교사에게 다시 사안보고를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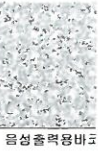


를 거부하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3차 사안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권선희가 옆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수정요구를 하였고, 문종섭의 지시에 따라 권선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문종섭은 2013. 12. 16.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안을 수정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이셋별의 담임교사인 김세희가 작성한 2013. 7. 11.자 업무일지에 '사건 발생, 속옷만 입은 상태로(상의는 입음) 서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상담일지에 2013. 7. 11.자로 "15:00 채윤미 선생님이 고등 2학년 교실에 들어갔더니 이셋별 학생이 컴퓨터 옆에서 팬티만 입고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져 있어 급히 교감, 담임교사, 보건교사에 연락을 취함", 2013. 7. 16.자로 "보호자 상담 후 사건처리하기로 결정함"이라고 최종 기재되어 있고, 그 파일의 최종 작성일이 2013. 7. 16. 오후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2013. 7. 11. 15:20경 보건교사 이복례와 이셋별 담임교사 김세희는 이셋별을 면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했는지 묻자 "네, 네"라고 대답하였고, 이셋별이 "준형이", "무릎", "고추가"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복례가 이셋별의 성기를 검사하였는데 분비물이 많았다. 김세희는 15:41경 민병화에게 '선생님,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겨서 교장선생님 부장선생님 같이 들어오셔야 할 것 같아요~ 빨리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병화는 이를 이효영에게 보여주었으며, 이효영은 이복례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복례는 성폭력 사건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문종섭, 이효영, 민병화는 급히 귀교하였다.



채윤미 등으로부터 쟁점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원고는 16:26경 인성인권부장 교사 김영기에게 유준형의 속옷을 검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속옷에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였고, 그 무렵 이복레, 김세희가 이셋별을 데리고 미르피아 여성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 공지원은 진료 당시 삽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성폭력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였으며, 이복레, 김세희는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귀교하였다. 같은 날 16:40경 문종섭, 원고를 비롯하여 채윤미, 이효영, 민병화 등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고, 이복레, 김세희는 귀교한 후 회의에 참석하였다.

한편 김세희는 이셋별의 모 최용순에게 전화로 진료결과를 설명하였는데 최용순은 '셋별이가 원래 분비물이 많고 가끔 집에서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한다'는 말을 하였고, 2013. 7. 12. 11:18 등 3회에 걸쳐 한 통화에서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 보니 셋별이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10년 정도 만난 (최용순의)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남자친구가 셋별이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것 같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김세희는 2013. 7. 12. 14:00경 이셋별을 면담하여 최용순의 내연남이 이셋별의 몸을 만지는 등의 성폭행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이셋별이 유준형에게 먼저 다가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세희는 김영기, 이효영과 함께 2013. 7. 15. 21:30경 이셋별의 집을 방문하여 최용순을 면담하였고 최용순에게 내연남에 대한 신고를 설득하였다.

(다) 이셋별에 대한 수사결과(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086호 사건)

권선희는 2013. 12. 2. 전북전주완산경찰서에 유준형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이셋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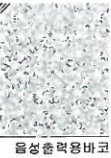


인준강간등) 사건을 수사한 후 2014. 5. 13. '피의자(이셋별)는 피해자(유준형)를 1회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사리판단 및 사물을 변별할 만한 정신능력이 없는 정신지적 2급 장애인 만 18세의 성숙한 신체조건에서 친모의 내연남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였으나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히려 성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되어 교실에 피해자 이외 중증장애 학생 3명이 함께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상대 본건 범행에 이르고 피해자 또한 사리판단 및 사물을 변별할 만한 정신능력이 없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자로 피의자의 행위에 스스로 응해주는 등 하여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지적 2급 장애자로 사리판단 및 사물을 변별할 만한 정신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인정된다'는 이유로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등에 대한 수사결과(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584호)

쟁점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민원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전주지방검찰청은 2016. 4. 29. '쟁점 사건 당시 유준형과 이셋별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신체접촉 모습을 피의자 채윤미가 직접 목격을 하였다거나 다른 피의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 원고, 문종섭, 김영기, 이복례, 채윤미, 김세희의 직무유기
 원고 등이 공모하여 2013. 7. 11.경 전주선화학교에서 “남학생 유준형이 2013. 7. 11. 14:50경 전주선화학교 고2 교실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학생 이셋별이 바지를 내린 채로 유준형의 무릎 위에 앉아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을 직무상 알게 되었음에도 그 성범죄 발생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2. 원고, 문종섭, 김영기, 김세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1차 사안보고서)

원고 등이 공모하여 2013. 7. 16.경 전주선화학교에서 “(성추행) 사안보고”를 작성하면서 “남학생 유준형이 2013. 7. 11. 14:50경 전주선화학교 고2 교실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학생 이셋별이 바지를 내린 채로 유준형의 무릎 위에 앉아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빼고 위 이셋별의 가정방문을 통해 알게 된 내용만 보고하기로 하고 “발생일시 : 2013. 7. 11., 사건 장소 및 주요내용 : 이셋별 학생 집 보호자와 교제중인 아저씨에게 성추행 의심됨”이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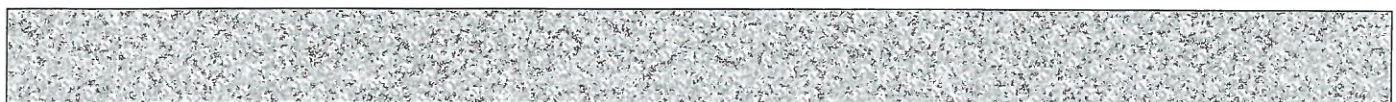
3. 원고, 문종섭, 김영기, 이복례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2차 사안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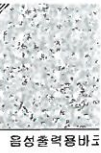
원고 등은 공모하여 2013. 10. 10. 전주선화학교 교장실에서 “(성관련) 사안보고”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남학생 유준형이 2013. 7. 11. 14:50경 전주선화학교 고2 교실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학생 이셋별이 바지를 내린 채로 유준형의 무릎 위에 앉아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7월 11일 오후 3시경 시험 끝나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셋별 학생이 교실에서 속옷은 입고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로 서 있고, 유준형 학생이 근처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감독교사가 발견함”이라고 기재하여 성범죄 정황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2) 판단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록 엄격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징계대상자에게 미치는 효력과 입증책임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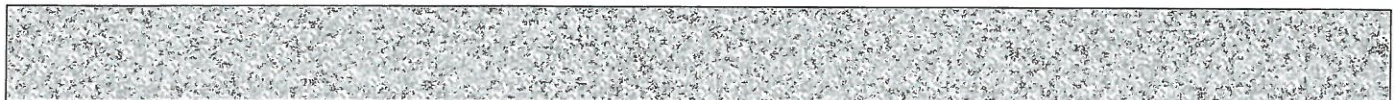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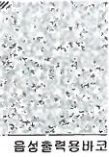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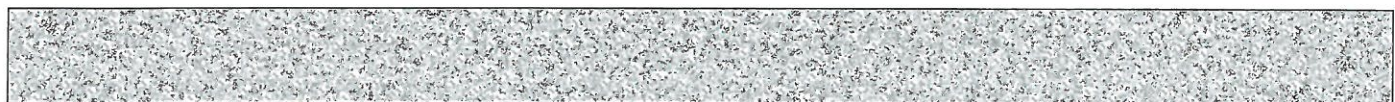
음성출력용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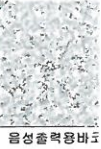
발생한 강제적인 성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쟁점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원고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내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제적인 성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윤미가 유준형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셋별은 그 옆에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셋별과 유준형 사이에 성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쟁점 사건 발생 당일의 교사들의 대처나 교장실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주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셋별이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내지 교장인 문종섭의 지시에 따라 이셋별에 대한 성기검사 및 산부인과 진료, 유준형에 대한 속옷 검사, 이셋별 모에 대한 면담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셋별에게 분비물이 많았던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유준형의 속옷은 깨끗하여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고, 이셋별의 모는 이셋별이 분비물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으며, 이셋별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 당시 외상이 없고 처녀막도 있어 외관상 특이소견은 없었고, 이후 이루어진 이셋별 모에 대한 면담 결과 이셋별 모의 내연남의 성폭력으로 인하여 이셋별이 성적 이상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비록 이셋별에 대한 수사결과 이셋별이 유준형을 1회 간음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유준형의 속옷 상태나 이셋별의 산부인과 검진결과 등에 비추어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④ 채윤미가 목격하였다는 장면이 바지를 벗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는 유준형의 무릎 위에 이셋별이 앉아 있었던 장면이건, 이셋별이 의자에 앉아 있는 유준형의





옆에서 바지를 내린 채 서 있는 장면이건 그 목격담에 상호 위치와 자세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시 교실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고, 유준형과 이셋별의 당시 자세,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목격자나 목격담을 들은 자가 유준형과 이셋별 사이에 성접촉을 넘은 성범죄나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셋별과 유준형이 둘 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어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 ⑥ 전주선화학교의 교직원인 김세희는 쟁점 사건 발생일 다음날 면담을 통해 이셋별이 모 최용순과 교제중인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정황을 알게 되자, 최용순에게 위 남자를 신고하도록 설득하였고 그 결과 그 남자가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성폭력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채윤미로부터 사건 발생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조치 결과 당초 염두에 두었던 유준형의 이셋별에 대한 성범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채윤미가 이셋별과 유준형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을 목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곧바로 이셋별이 유준형을 간음하였다는 쟁점 사건의 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가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확실히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교사가 학생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사건 발생 사실,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목격 또는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내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성폭력)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상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기재한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는 징계의결서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징계의결서에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서 기재된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쟁점 사건이 발생한 후 권선희가 2013. 7. 24.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5.부터 9. 24.까지 기간 중 7일간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문종섭이 2013. 9.경 원고에게 지시하여, 이효영, 김영기, 채윤미, 김세희, 민병화, 이복례 교사에게 '상담일지', '2013년도 성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안건 : 성관련 문제 발생)', '학생행동관찰 및 진로·상담 기록', 민병화가 권선희, 유준형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등을 나누어주고 감사에 대비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감사 직전에 위 자료를 교사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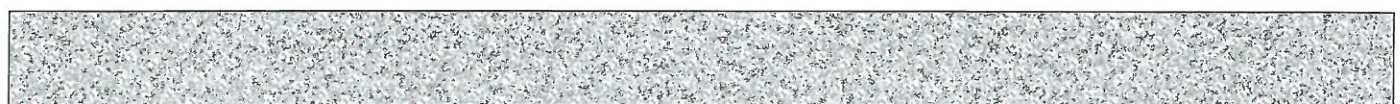
그러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채윤미가 '유준형이 바지를 내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셋별이 바지를 내린 채로 유준형의 무릎 위에 앉아 마주보고 있었다'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이 배포한 자료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억의 환기 등을 위하여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그 자체로 감사 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문종섭의 지시에 따라 당시 작성된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2013. 11. 6. 문희식 행정실장과 함께 다솜학교에 방문한다고 출장 처리한 후 고창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온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허위·출장 관련 복무 소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당시 실제로 다솜학교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중간에 행선지가 바뀌었는데 아마도 문희식이 원고가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로 차원과 자신도 사무관 시험 준비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다녀온 이후 출장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뿐이라 할 것인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된 것으로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2007. 5. 15.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스승의 날 기념 표창을, 1998. 12. 18.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2월은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그 징계의 수위가 과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이 현 우





음성출력용바

판사 남해인 남 해 인 

판사 최미영 최 미 영 





음성출력용바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장)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형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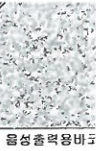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형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종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종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해임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음성출력용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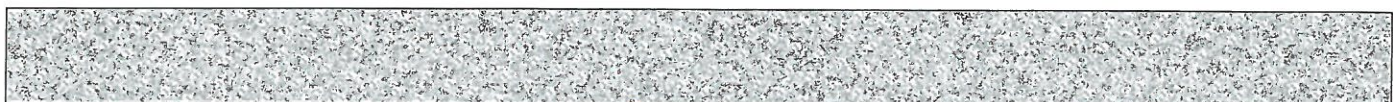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화·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매매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라. 성폭력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사.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 파면 파면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해임 해임 파면-해임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경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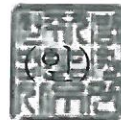


정본입니다.

2017. 5. 12.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유승주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